



세무법인 세 립 텍 스

우05116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/15층3호(구의동, 테크노마트 사무동) Tel.3424-3240~6, Fax. 3424-3247

수 신 : 각 거래처 사장님
참 조 : 경리담당자
내 용 : 2021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

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오는 1월 25일(화)은 2기확정 부가세신고일입니다.

각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~12월분(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예정신고자는10월~12월분) 매입과 매출세금계산서 및 영수증(전표)등 업무관련 자료를 2022년 1월 13일(목)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행자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는 홍택스의 MY NTS 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.

◆ 부가세신고 자료 ◆

- 법인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개인사업자는 **전자분 매출과 매입은 리스트로 주시고 종이세금계산서는 보내주세요.**
- 신용카드매출내역 및 현금영수증매출내역(단말기회사에 집계표 요청)
- 기타 매입, 매출 관련자료
- 수입(정산서 및 수입신고필증 포함) 및 수출(수출신고서 및 외국환매입증명)자료
- 주거래 통장내역서(사업용계좌) 및 업무관련 입출금내역 있는 통장(엑셀파일)
- 매입세금계산서 받으실 때는 반드시 우리 사업자 것이 맞는지 확인요망(필수)
- 부가세 신고 자료 누락 및 중복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.
- 2021년 전표 또는 영수증과 통장내역을 아직 보내주시지 않은 사업장은 이번 부가세자료와 함께 꼭 발송 부탁드립니다.(늦어도 1월말까지는 발송 부탁드립니다)

- P.S
- 1) 경비 현금지출 3만원 초과시 세금계산서 또는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이면 계산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신용카드사용 혹은 지출증빙영수증을 받으십시오.
(송금영수증 만으로는 경비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상대방 인적사항이 기록된 증빙을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)
 - 2) 접대비는 무조건 1만원 초과시 신용카드사용 및 지출증빙영수증을 받으셔야합니다.
(상품권은 무조건 신용카드 사용하셔야 접대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)
 - 3) 업무와 관련된 입.출금은 꼭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시기 바라며, 사업용계좌변경 및 추가시 국세청에 변경신고해야하오니 담당자에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.
 - 4) 개인적용도의 입금및지출액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
 - 5) 결산시 2021.12월말 채권 및 채무내역과 재고리스트가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세요.
 - 6) 연말정산 안내문은 추후 보내드리겠습니다.

2022. 1. 5